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관련 771
----------	--------

제출년월일 : 2012년 5월 2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2012년 5월 3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재의를 요청[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4933(2012.05.04)]하였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의요구 요청 사유 -

1.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 소지가 있음
 - 헌법(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조례로 교권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조항에 위배됨
 - 국공립학교의 초·중등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라는 점, 국가는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여 보조(비용부담)하므로 교원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의 성격이 강하여 조례제정의 대상이 아님.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데도 조례로써 교육 및 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의 소지가 있음
2.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조례로써 교육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재의를 요청해 왔기에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2012년 5월 2일 의결하고 5월 3일자로 이송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로 재의를 요구함.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당사자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을 말한다.
3.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4. "교권침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동료교원, 학교 행정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제2호의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 받는 현상을 말한다.
5. "교육분쟁"이란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당사자 간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제3조(교권보호의 기본원칙) 교권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대한민국헌법」과 개별 법률이 정한 이외의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2. 교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② 교원은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

③ 교원의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법령에 따른 절차 이외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교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될 수 없다.

④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에 따른다.

⑤ 교원은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원에게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 농락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① 교원은 성별, 종교, 신념, 나이,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그 외의 법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 등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의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학교 및 학교법인은 특정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의 가입 또는 불가입을 고용 및 승진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④ 교원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는 특정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 및 승진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학교 법인의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각종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며, 학교운

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2.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3.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⑤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교원은 제외한다.

⑥ 교육감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에 교권침해 관련 교육을 위한 일정 시간을 할당하여 운영한다.

⑧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7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1. 학교장은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교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예·결산 그 밖에 교육활동 전반에 관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3. 학교장은 보직교사 임면, 업무분장, 담임배정, 학년배정, 전입요청, 초빙 등의 교원인사관리를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4. 학교장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운영하고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학교장은 비정규직 교원에게 근무조건, 업무분장 등에 있어서 정규직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1.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2.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동호회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

3. 교원의 학급운영 및 학생상담을 위한 예산 편성

4.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학급운영 및 학생상담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여건 확보

③ 사립학교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의 책무로 본다.

제8조(교원, 학부모, 학생의 책무) ① 교원은 동료교원 및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을 연찬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폭력, 약물, 자살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하며, 학생과의 건전한 소통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인성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

⑤ 학생은 교권을 존중하고,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학교장 또는 분쟁당사자가 교육감에게 조정 신청한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2.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응
 3. 교권보호를 위한 상담 및 관계자 교육
 4. 그 밖에 교권보호,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다.
1. 교육분쟁이 교직원의 비위나 과실로 인한 것이고 그 수준이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의 징계
 2. 교육분쟁의 원인이 학생의 교권침해로 인한 경우 학생의 전학 또는 학교 재배정
 3. 교육분쟁의 원인이 학부모의 교권침해로 인한 것이고 그 수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기관에의 고발
 4. 교육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민사적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결정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의2의 법률지원단을 통한 피해자 조력
 5. 교원이 학부모나 학생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여 심리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 및 치료의 제공
- ④ 위원회가 제3항의 권고여부를 판단할 경우 미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인권옹호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학부모위원, 전문가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지원센터의 구성은 지원센터장 1명과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지원 및 사무처리를 위한 직원을 둔다.
-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교권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2. 교권침해 신고접수 및 상담
3.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4.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5.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6. 언론 보도 등 교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적극적인 해명과 정정보도 요청
7. 그 밖에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신고접수된 교권침해 및 분쟁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한다.
 - ⑤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립학교의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의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